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관한 라크나다 수도국 방침

목적/배경

이 방침의 목적은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상원법안 998("SB998")에 의거하여 체납된 주거용 계정의 미납에 대한 주거용 수도중단을 위한 지침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 방침은 영어와 민사법 1632 항에 열거된 언어, 서비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 10 퍼센트가 사용하는 언어로 찾아볼 수 있다. 방침은 지역구의 웹사이트에 나와야 한다. 이 방침의 약정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막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818) 790-6749 으로 연락한다.

체납계정

계정에 2 개월에 한번씩 청구하고 받으면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일로부터 60 일(육십)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다음 규칙은 체납 계정의 수금에 해당된다.

1. **체납 통지:**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칠(7)영업일 전까지 계정의 고객에게 문서로 연락한다. 체납과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고객의 계정에 나온 주소에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주거지의 고객에게 발송한다. 고객의 주소가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서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주소로 보내야 하며, SB998 에 따라서 "입주자" 앞으로 보낸다.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야 한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 금액
 - c. 주거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납부일이나 납부약정 체결일
 - d. 채무금액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의 설명
 - e. 연체된 고지서의 재고와 항소에 관한 청원 절차 설명
 - f. 고객이 납부연기, 인하,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하는 절차의 설명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 방침은 문서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는 방법을 상의할 것을 전화로 제안하면서 지역구는 서비스 중단이 임박한 고객에게 통지서를 대안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지역구가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하지 못하거나 통지서는 돌아온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기 48 시간 전에 지역구는 주거지에 찾아가서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와 지역구 방침을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두고 온다.

별도납부약정의 연장 요청

고객은 과거의 만기요금에 대해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재량으로 허가를 하게 된다. 별도납부약정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고객은 단수일 **전에** 다음 **세가지** 조건에 **전부**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1. **건강 상태:** 수도서비스의 중단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는 사실을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제출한다.
2. **경제적 불능:** 고객은 수도시스템의 정상 청구주기에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a) 고객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SSI/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인 경우; 혹은 (b)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
3. **별도납부약정:** 고객이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 납부인하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자격 증명을 적시에 접수받고 확인한 후, 지역구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필수정보를 요청하거나, 혹은 고객이 이행하게 선택한 별도납부약정과 해당약관을 통보하기 위해 즉시 연락한다.

다음 상황에서 지역구가 서비스 중단 의사 최종통지서를 건물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한 이후 5 영업일보다 더 빠르지 않은 날짜에 주거용 서비스가 중단된다.

1. 고객은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약정, 육십(60)일 이상 체납료에 대한 납부인하약정의 연기를 준수하지 않는다.
2.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약정, 납부연기약정이나 인하약정을 이행하는 중에, 고객은 현재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60 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집주인-세입자 절차

건물주나 관리인이 기록상 고객이며 수도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되고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거주용 건물에 적용된다

1. **필수 통지서:** 수도공급의 잠정적 중단일로부터 최소한 십 10 역일 전에, 지역구는 수도서비스가 중단하는 사실을 통지서로 건물의 세입자/입주자에게 알리려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분리된 단독 주택이면, 지역구는 기록상 체납된 계정의 고객이 현재나 과거에 주거지의 집주인, 관리인, 에이전트였다고 입주자가 증명하게 한다. 증명은 입주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고 나온 임대계약서나 임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기타 정부 서류, 혹은 민사법 1962 항에 의거하여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다.

SB998 에 의거하여, 지역구의 고객이 되는 주거용 입주자는 월세 등의 주기적 납부금은 주거용 수도요금이 포함되고, 요금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전 납부기간 동안 서비스에 대해 지역구에 납부한 적절한 요금은 전부 납부기간마다 주기적 납부금을 공제해도 된다.

수도요금이 세입자/공급자의 월세에 포함되어 수도 요금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입자/공급자가 공급자의 고객이 되면, 세입자/공급자가 이전 납부기간 동안 공급자에게 납부한 적절한 수도요금을 추후 월세에서 공제해도 된다.

항소

고지서의 항소나 재고 요청을 이전에 한 적이 없고, 고객은 고지서에 나온 수도 사용량에 관해 고지서가 착오라고 주장할 경우, 통지서와 관련된 고지서의 항소나 재고신청을 할 수 있다. 항소나 재고요청은 문서로 해야하며 항소나 재고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항소나 재고신청은 체납 통지서일로부터 오(5)영업일 내에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항소나 재고신청을 접수한 후, 부장이나 대리인이 수도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고객에게 간결한 판결 요약서를 제공한다. 요금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할 경우, 수정 고지서가 발급되고 수정된 요금은 수정일로부터 십(10)영업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수도요금이 정확하다고 판결하면, 부장이나 대리인의 판결일로부터 이(2)영업일 내에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객은 이사회에 판결을 항소한다. 이사회에 항소를 제기하려면, 부장이나 대리인이 최초 판결을 내리고 칠(7)영업일 내에 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이 후속 항소는 이사회 다음 정기 회의에서 심리하게 된다.

재연결 비용

서비스가 중단되서 다시 연결하게 될 경우, 지역구의 정상 근무시간에 일한 재연결 수수료는 50 달러를 초과하면 안되며, 비 근무시간에 일한 재연결 수수료는 150 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2021 년 1 월 1 일부터 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러한 한도는 매년 조정된다.

부도수표

불충분한 자금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한 수표가 부도나고 계정이 현상유지하는 경우, 수표를 다시 입금할 것이다. 수표가 2 번째로 부도가 나거나 구좌를 닫아서 부도가 난 경우, 지역구는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일 전화로 연락이 안되면, 통지서를 건물에 두게 된다. 납부마감일은 연체 통지서에 나온 납부일보다 빠르지 않은 날짜로 정하고, 만일 연체 통지서를 이전에 제공한 적이 없으면, 부도 수표로 납부한 고지서로부터 육십(60)일이 지난 날짜로 정하고, 통지서에 나온 납부일까지 부도수표 금액과 부도수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다. 채무액은 전부 현금이나 보증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으로 중단된 계정의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하여 요금을 납부한 수표가 유통불가능으로 부도가 나면, 통지서를 건물에 두고 난 후 최소한 삼(3)영업일이 지나서 지역구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채무액은 전부 현금이나 보증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